

제4호
2015년 2월 16일(월)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원지원센터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 정보 소식지

전화 : (070)7165-0017
전송 : (02)3401-6549
http://kaff.or.kr
kaff0001@gmail.com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1억 5천만원어치 기프트카드 살포로 물의

- **고동희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조합원 1,480명에게 농협 기프트카드 10만원 어치씩 살포했으나,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나 몰라라 하는 상황임**
 - 2월 15일 세계일보 보도에 의하면, 고동희 현(現) 인천·강화·옹진 축협 조합장이 2월 10일경 조합원 1,480명에게 현금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한 NH농협카드 발행 기프트카드를 1인당 10만원씩 보낸 것으로 확인됐음
 - 축산기자재 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된 기프트카드는 재출마가 확실시되는 현직 조합장에 의해 조합장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인 조합원 전원에게 본인의 치적을 홍보한 인쇄물과 함께 우편 송부됐음
 - 이 우편물은 등기로 보내져 전(全) 조합원이 수령했을 것이 거의 분명하고, 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세계일보는 보도하였음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해당 선거를 관할하는 강화군 선관위가 관련 내용을 파악해 놓고도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라는 점임. 중앙선관위가 후보자와 조합원이 더 이상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들도록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돈 선거'를 근절한다는 방침이지만 단속 의지에 의문이 들고 있음
 - 법조계 관계자는 "외관상 용도와 사용처를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현직 조합장이 현금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 10만원씩을 조합원 1,500명 전체에게 전부 1억 5천만원이나 배포한 행위는 불법선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농후하다"고 설명했음

농축협 조합장 선거운동 방법 안내

- **선거공보 및 선전벽보 관련 할 수 없는 행위들**
 - 선거공보에 허위의 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임
 - 선거공보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임
 - 선거공보를 가정집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선거인에게 임의로 배부한 행위는 위법임 (서울고등법원 1995. 12. 29. 선고 95노2832 판결)
 - 선거공보에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임
 - 정규학교를 수학한 이력이 있음에도 학력 또는 경력에 '독학'으로 게재하는 행위 또한 위법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유의사항**
 - 금지 시간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 후보자 명의의 전화(일반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이 허용되는 것임

-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단문 문자 및 장문 문자는 가능)
- 후보자가 자신의 홍보 및 안내멘트('후보자 기호○번 ○○○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등)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가능
-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도 가능
- 후보자 외에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행위는 불가능
- 특정 장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여론조사 행위 포함)는 불가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유의사항

- 후보자가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글, 사진,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
-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운동용 명함을 스캔하여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도 가능(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에 해당 농·축협에 게시된 자신의 게시물로 바로 가는 홈페이지 주소 링크를 다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뜻임)
- 해당 농·축협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불가능(포털 게시판, 신문사 게시판에 게시 못함)
-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포함)를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불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포털 사이트, 인터넷 언론 포함)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행위도 불가능

○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한 유의사항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후보자가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 호소를 하는 행위는 가능
- 병원(1층 로비와 복도는 가능하지만 병실 안에서는 불가능)·종교시설·극장의 안, 해당 농·축협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서는 배포할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6고합189 판결)
- 후보자가 아닌 자(가족 포함)가 명함을 배포할 수 없음
- 명함을 호별투입·자동차 와이퍼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한 행위를 할 수 없음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4타3062 판결)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2015.3.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반사례 예시집"에서 발췌